



# 현대해상 풍수해보험(VI)

## 계약자 유의사항

### 01.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02. 3대 기본지킴이(자필서명, 청약서부분전달, 약관전달)

자필서명(인터넷 계약은 공인인증을 통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청약서 부분전달(인터넷 계약은 예외됩니다.) 보험약관전달(인터넷 계약은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3대 기본지킴이 미이행시는 계약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03.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계약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인터넷계약의 경우 인터넷 입력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른 회사와 다른 계약을 맺을 때 보험의 목적물을 양도할 때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하는 경우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위 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04. 보험료 납입 / 환급금

보험료는 회사에 직접 납입,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해 납입하실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 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인터넷계약의 경우는 신용카드를 통해 납입하실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 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으며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05. 보험금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내 실손보상되며,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06. 청약철회 청구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청약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를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함. [전문금융소비자]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별률' 제2조(정의) 제9호에 따름.

### 07.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http://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8.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1588-5656, 인터넷: [www.hi.co.kr](http://www.hi.co.kr) →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9. 보험모집질서위반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금융감독원

\*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 e-금융센터([www.fcsc.kr](http://www.fcsc.kr))

#### • 손해보험협회

\*전화: 국번 없이 1372 \*인터넷 : 홈페이지([www.knia.or.kr](http://www.knia.or.kr))